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심위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복제물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 >
■ 김영배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05256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심위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복제물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 (안 제25조의2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5.

다. 회 부 일 : 2024.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광범위한 공유·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의 실효성 있는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방심위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복제물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 (안 제25조의2 신설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¹⁾ 및 제14조의2²⁾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물을 인식하는 등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u>전자문서를 포함한다</u>)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 ----- ----- ----- ----- <u>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수사의뢰) 심의위원회는 심의 · 의결(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인식하는 등 범죄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범죄혐의를 발생하였을 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

- 다만, 방심위는 실무적으로 디지털성범죄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포자 및 해당 사이트(운영자 등) 등에 대한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수사의뢰는 방심위와 경찰청 간 구축된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방심위에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4건, 2022년 1,722건, 2023년 30건이고 2024년에는 11월까지 200건임.

<디지털성범죄 정보 수사의뢰 요청 현황>

대상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1월)
경찰청	24건	1,722건	30건	200건

주: 2022년도는 성범죄자 ‘엘’ 관련 게시·유포자 특징을 위한 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해당 불법촬영물 URL정보 및 채증자료 수사의뢰 요청(1,577건) 등 포함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개정안에 대해서는 범죄의 실효성 있는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방심위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방심위가 현재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에 대상기관으로 경찰청을 지정하여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방통위는 현재 방심위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고 심의·의결할 경우, 심의 후 경찰청과 연계·구축되어 있는 불법정보공조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한 후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심의요청을 할 경우, 이를 방심위가 다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절차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방심위는 경찰청과 연계·구축된 불법정보공조시스템을 통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사의뢰 의무조항이 아닌 “재량조치”로 검토하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범죄의 실효성 있는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방심위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와 함께 현재 이미 불법정보공조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통위, 방심위의 신중검토 입장 및 수사의뢰를 의무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심위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226
